

2024. 3. 21. (목) 10:00  
제301회 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2024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예약 및 배차 권한이 道-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 운영시간(365일, 24시간), 운행지역(수도권)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사항 명시
- 제14조(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 등)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 기준은 교통약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

○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민간위탁기관 선정은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토록 명시

## 4. 참고사항

○ 부서협의 결과

1) 협의기간 : 2023. 11. 9. ~ 2023. 11. 29.

2) 협의결과

-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첨부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소비자정책심의 : 심의대상 아님

○ 입법예고 결과

1) 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17.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경기도 관련 부서 :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에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예약 및 배차 권한이 道-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운영 추진되며, 변화된 여건 등에 맞추어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방법 등의 정비가 필요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시간, 운행지역 등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사항 등의 문구를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기준은 교통약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개정된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여건을 고려해 개정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2023. 5. 16.>

[전문개정 2012. 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법 제16조 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 7)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 3) 도지사가법 제16조 제2항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2023. 7. 20.>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